

대전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가단116310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은
담당변호사 석윤수

피 고 1. A
2.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정
담당변호사 김병구, 송행수
변 론 종 결 2023. 3. 23.
판 결 선 고 2023. 5. 11.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47,260,966원 및 그 중 245,837,786원에 대하여 2022. 4. 1.부터 2022. 5. 12.까지 연 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2022. 2. 22.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3. 15. 피고 A과 신용보증원금 ‘2억 7,000만 원’, 채권자 ‘C은행 D지점’, 신용보증종류 ‘대출보증’으로 각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에 기초하여 C은행 D지점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 A은 2021. 12. 21.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원고는 C은행으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대위변제 요구를 받고 2022. 4. 1. C은행에게 245,837,786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다. 피고 B은 2020. 11. 16. 오빠인 피고 A에게 사업자금(마트운영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대여하였다. 그때로부터 1년 3개월 여 지난 2022. 2. 22. 피고들은 위 1억 원의 대여금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각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은 가액 179,799,51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위 C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2억 7,000만 원 등 약 4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한 사행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아직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921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 2018. 3. 15. 체결되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22. 2. 22.로부터 1개월이 조금 지난 2022. 4. 1. 원고가 C은행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2007. 2. 23. 선고 2006다4730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A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일반

채권자들에 대해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 B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자금 대여 당시 근저당권을 설정받으려 하였으나 피고 A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은 상태였고,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위 대여금을 변제할 텐데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 어려워진다고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한 것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 대여일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점, 위 대여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는 사업자금 유통을 위한 담보제공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고 A이 위 대여원리금 분할금을 피고 B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왔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에 소액의 가압류등기만 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은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구체적 판단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보건대, 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분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이 사건 대여일인 2020. 11. 16.경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인 2022. 2. 22.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②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이 사건 대여일 이후에 위 대여금의 담보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담보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하나인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은 경우(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B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근거로 주장하는 법리들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나아가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실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대전광역시 중구 대 108.1㎡

2.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위 지상

조적조 아스팔트 영갈지붕

2층 주택

1층 58.15㎡

2층 40.32㎡

청 구 원 인

1. 당사자관계

가. 원고는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유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입니다.

나. 피고 A는 'E 마트'라는 상호의 기업체를 운영하던 자로서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 체결에 따른 채무자입니다.

다. 피고 B는 피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자입니다.

2. 신용보증약정 및 구상금청구권 발생

가. 신용보증약정 및 신용보증서 발행

(1)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2018. 3. 15. 신용보증원금 27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8. 3. 15부터 2019. 3. 14.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기하여 2018. 3. 15. 소외 C은행 D지점(이하 '소외 은행'이라 합니다)에 보증번호 F, 보증금액 270,000,000원, 보증기한 2019. 3. 14.(신용보증 조건변경 신청에 의하여 보증기한이 2022. 3. 11로 변경됨)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신용보증약정서, 갑 제2호증 신용보증서, 갑 제3호증의 1내지3 신용보증 조건변경 통지서 각 참조).

(2)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는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대위변제 할 경우, 위 신용보증약

정서 제10조 “상환범위”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①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1.보증채무이행금액, 2.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3.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4.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6.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 7.대위변제수수료, ②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원고가 대신 지급한 비용과 1.제8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2.채권의 집행보전(해지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된 비용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신용보증약정서 참조).

나. 대출 실행 및 신용보증사고 발생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소의 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기업 일반자금대출로 대출받았으나 2021. 12. 21. 이자연체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갑 제4호증 관리기업종합정보표, 갑 제5호증 신용보증사고통지서 각 참조).

다. 구상금 청구채권 발생

원고는 피고 A의 위 신용보증사고로 인하여 소의 은행으로부터의 대위변제 요구에 따라 2022. 4. 1. 소의 은행에 245,837,786원을 대위변제하여 피고 A에 대하여 대위변제금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갑 제6호증 대위변제증서 참조).

라. 미수위약금

신용보증기금법 제34조 및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3조 “보증료등 납부”에 의하여 원고는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이 주채무이행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위약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바, 피고 A에 대한 미수위약금으로 226,3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관리기업종합정보표 제2항 참조).

마. 대지급금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 “상환범위”의 ②항에 근거하여 피고 A에게 대지급금(벌리절차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바, 피고 A에 대한 대지급금으로 1,196,8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관리기업종합정보표 제2항 참조).

바. 지연손해금률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률은 이 사건 대위변제일인 2022. 4. 1.부터 현재까지 연 8%입니다(갑 제7호증 기간별 손해금률 변동표 참조).

사. 소결

그렇다면 피고 A은 원고에게 247,260,966원(대위변제금 245,837,786원+미수위약금 226,350원+대지급금 1,196,830원) 및 그 중 245,837,786원(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2.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까지는 원고 소정의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